



보도자료

▶ 퇴직연금복지과 김종철 과장
최영범 사무관

- ▶ 2008. 10. 1. 배포
- ▶ 총 쪽 (사진없음)

TEL : 02-2110-7417
E-MAIL : oopschoi@molab.go.kr
FAX : 02-507-1709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신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 퇴직연금 종류를 다양화 하고, 중소기업장은 공동도입 가능

-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고, 사업장 도산 등에 따른 체불('07년말 기준 2,900억), 잦은 중간정산('06년말 기준 68%사업장), 잦은 직장이동('07년 기준 5.9년)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2층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 역할을 하고자 2005.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매년 퇴직연금은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속도로 확산되어 시행 3년차인 2008.8월말 현재 가입 근로자는 79만명, 적립금액은 4.3조원에 이르고 있다.
 -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GDP수준(미국 1경 5000조원, 일본 3,000조원, 영국 2,900조원)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영과정에서 지적되었던 ①도입절차의 복잡성, ②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부족 등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올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부개정형태로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 도입절차를 합리화하고 신설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현재는 동의를 필요로 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한 경우(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퇴직연금을 다양화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장의 가입을 손쉽게 하였다.

- 기존에 근로자는 DB형 또는 DC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 각각의 장점(안정성과 수익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수의 사용자가 협회 등 대표사용자가 설정한 DC형 표준 규약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공하는 표준 DC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규약작성 및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도입절차가 간소해지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하여 수수료 등 제도운영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영세사업장 등이 보다 손쉽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실제 은퇴시점까지 충분한 노후재원으로 보전되도록 하였고, 자영인도 원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퇴직연금과 같이 제한(주택구입, 장기요양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두어 노후재원 자체의 소진을 막고자 하였다.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서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DB형 및 DC형에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자기 부담으로 충분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영인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기사, 택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연예산업 종사자 등 1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개인사업자임)의 활용이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노(한국노총, 민주노총)·사(경총, 대한상의)·정(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전문가(학계 및 업계)로 구성된 퇴직연금실무위원회('07.11 ~ '08.6월, 8차), 퇴직연금 정책포럼('08.7 ~ '08.9월, 2차)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 금년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퇴직연금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재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1. 퇴직연금 도입현황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

<붙임 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08.8월말 현재)

1. 도입 사업장 수 기준

○ 전체 5인 이상 사업장('06년 기준 504,210개)의 8.4%인 42,105개소 도입

구 분	합 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DB & DC	IRA 특례
사업장 수	42,105	8,249(19.5)	16,828(40)	366(0.9)	16,662(39.6)
500인 이상	200	93(46.5)	51(25.5)	56(28)	-
500인 미만	41,905	8,156(19.5)	16,777(40)	310(0.7)	16,662(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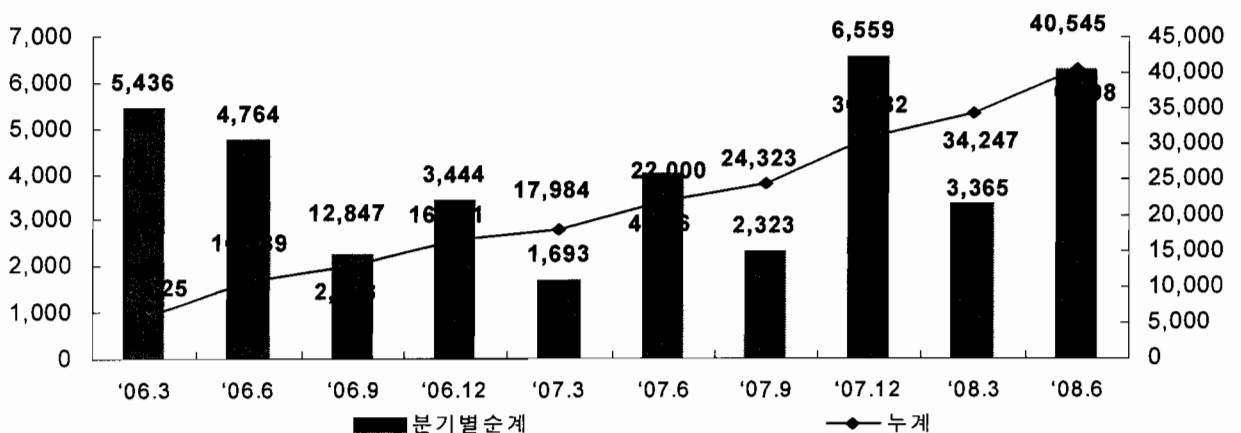
* **개인퇴직계좌(IRA) 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이 DC와 유사하나 사용자의 규약 작성·신고 의무 및 교육의무가 면제됨

○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

구 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①도입사업장수	24,441	11,156	5,053	1,085	170	200
②전체사업장수	1,189,714	156,304	45,083	8,700	1,018	965
비율(①/②)(%)	2	7.1	11.2	12.5	16.7	20.7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분류(305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141개)을 합한 총 446개소('08년) 중 67개소가 도입되어 도입률은 15%임

○ 분기별 증가 추이



2.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적립금 약 4.3조원(43,090억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적립금 (비율)	43,090 (100)	28,207 (65.4)	11,923 (27.7)	1,880 (4.4)	1,080 (2.5)
1개소당 평균 적립금액	1.02	3.27	0.69	0.11	-

○ 업권별 적립금 현황(운용관리기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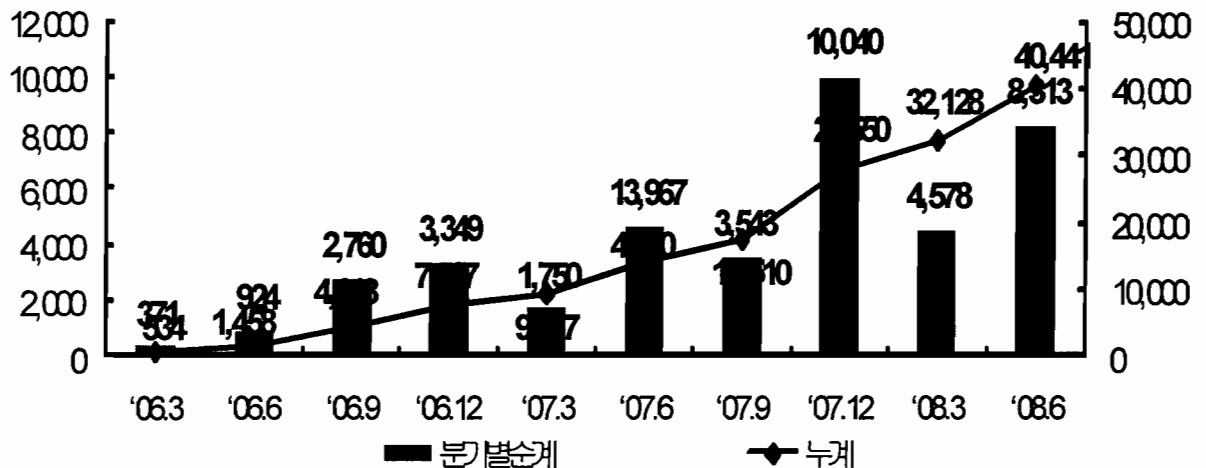
- '08.8월 현재 총 46개소, 적립금 4,309,051백만원

구분	개	은행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사업자 수	46	13	12	13	8
적립금(백만원)	4,309,051	1,847,694	1,692,764	468,555	300,037

* 업권별 협회에 실적 제출한 운용관리기관 기준이며, '08.8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기관은 52개소임

○ 분기별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3. 가입 근로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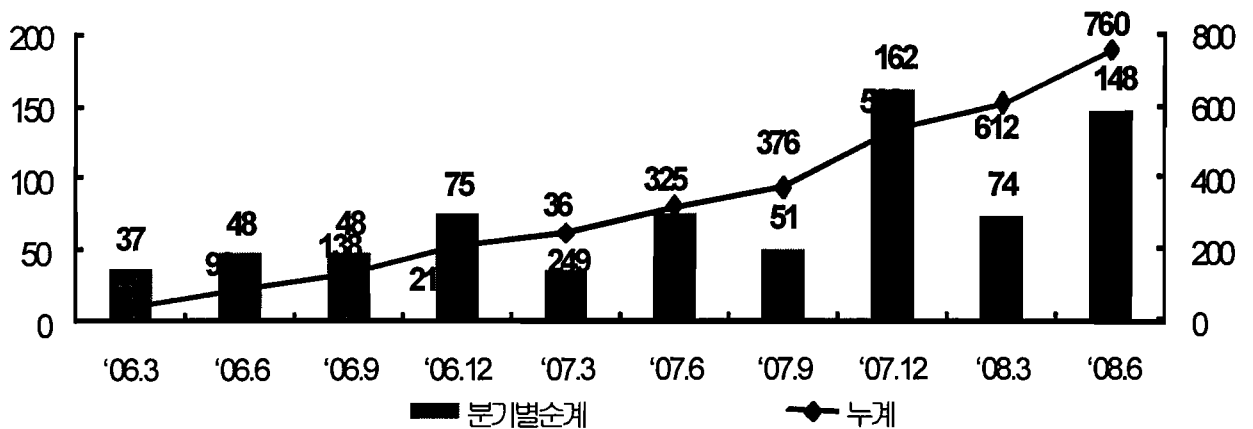
-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총 6,811,867명, 매월노동통계 '07년 평균)의 11.6%인 총 787,004명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비율)	787,004 (100)	428,400* (54.4)	295,242 (37.6)	59,280 (7.5)	4,082 (0.5)
1개소당 평균 가입근로자수	18.7	49.7	17.2	3.6	-

* DB 가입자수의 경우, 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중복가입자가 포함된 수치임

○ 분기별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2008. 10. 1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입근로자가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이라 한다)와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제도(이하 “DC형”이라 한다)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DB형과 DC형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DC형에 한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표준화된 퇴직연금 규약에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절차 간소화, 제도운영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장(특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제23조)

나. 퇴직급여제도의 수급권 및 연속성 강화(안 제8조, 제15조, 제16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은퇴시점까지 충분한 노후재원이 보존되도록 함(제8조)
- DB형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 지 여부를 검증 하여 이를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고
 - 검증결과 적립금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해소 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을 강화함(제15조)
- 근로자가 퇴직으로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를 55세까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시킴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함(제16조제4항)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안 제24조, 제25조)

-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DB형, DC형에 준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제5장 신설)
- 자영업인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2층 노후보장 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 DB형 및 DC형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자신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DB형 및 DC형과 더불어 충분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제24조2항)
- 직장에서 이직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 자도 자신 부담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제24조제6항)

라. 기타 퇴직연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안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38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 권유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받은 자에 대한 요건, 위탁범위 등을 규정함(제30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사업 중단의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 조치, 재진입 제한 등을 규정함(제31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업장의 가입자·적립금·부담금 납부 현황 등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4항)
- 사용자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의 납입, 가입자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하고,
 - 제도 중단인 경우도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제38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제3·4장에 따른 퇴직

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9. "개인형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 등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퇴직연금을 말한다.
10.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람을 말한다.
11.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또는 제1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정된 퇴직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되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새로이 설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설립(통합·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제12조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제19조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제8조의 퇴

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담보 제공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7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8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가입기간) 제12조제3호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해당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급여수준) 제12조제4호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재정건전성 확보)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예상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2.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제1항의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검증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검증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검증 결과 매 사업연도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지급절차) ①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이내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현황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 수익률 등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입자별 복수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별 복수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각

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 금액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제도가입비율을 곱한 금액
 2. 제20조의 금액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제도가입비율을 곱한 금액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각 제도가입비율의 합은 1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미리 확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3호는 제13조, 제8호는 제17조, 제6호 및 9호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탈퇴한 때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납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제23조(복수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둘 이상의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2. 대표사용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공동으로 가입시킬 목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규약

가. 제19조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③ 사용자가 제2항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설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제3장 및 제4장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로서 제6항의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자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④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⑤ 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의 종류별 지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가입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⑦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 운용중인 자산으로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전할 수 있으며, 제19조제6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가 요구로 제24조의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3.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5.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6. 그 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7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한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자산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 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운용관리업무를의 수행)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제30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3·4·5장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보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 또는 등록 말소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7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8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

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④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료의 제출을 명함에 있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가입자 현황, 급여지급현황, 부담금 납부현황 및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등(이하 '사업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 체결 시에 당해 사업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약관등의 변경·보완명령에 따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제35조제2항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기존 적립금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보호 등을 위하여 미납 부담금의 납입, 잔여 적립금의 가입자 분배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로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업무의 협조)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2조(벌칙) 제9조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 퇴직시에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여의 미지급 또는 부담금을 미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3조(벌칙) 제4조제2항에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제5항에 따른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 호,200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

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4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개인퇴직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설정된 개인퇴직계좌는 이 법 제24조에 의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2) 2110 - 74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 명 자 료

목 차

I. 개정배경 및 기본방향	37
1. 개정배경	37
2. 기본방향	40
II. 개정내용	43
1.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43
1-1. 가입자별 복수퇴직연금제도 도입	43
1-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45
1-3. 복수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47
1-4. 담보대출 활성화	50
2.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51
2-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51
2-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53
2-3. DB형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54
2-4.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56
2-5. 퇴직연금의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57
2-6. DC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	58
2-7. DB형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 변경	59

3. 제도 확산 촉진	61
3-1.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61
3-2.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63
3-3.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개선	65
4. 제도 운영인프라 확충	66
4-1.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66
4-2.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등 마련	68
4-3. 제도폐지·중단 관련 규정 보완	70
4-4. 조사·통계 인프라 구축 관련	72
4-5. 특별이익 제공 관련 사업자책무 구체화	73
4-6. 반의사불벌 조항 신설	75
4-7.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	76
4-8. 과태료 규정 개정	77
4-9. 양벌규정 조항 개정	78

Ⅲ. 추진일정	79
----------------------	-----------

I. 개정배경 및 기본방향

1. 개정배경

가. 퇴직연금 개요 및 장점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12월 도입**
 -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운용(운용 권한이 사용자에 있으면 **DB형**, 근로자에게 있으면 **DC형**)하다가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Flexicurity) 가능

나. 도입현황 평가 및 과제

- '08.8월말 현재 가입근로자는 78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 680만 명의 11.2%), 적립금액은 4조원(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51개소), 도입사업장은 4만개소(5인 이상 사업장 50만개 의 8.4%)
- 도입속도가 지속 증가하여(상반기 적립금 대비 190%증) 순조롭게 확산 중이나, 2층 연금으로서의 취지*와 연간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18조원)를 감안할 때 더욱 가속화할 필요

* 선진국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축을 형성(미국 1경5천조, 일본 3천조, 영국 2.9천조)

< 퇴직연금 도입 현황 ('08.8) >

구 분	합 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비율)	787,004 (100)	428,400 (54.4)	295,242 (37.6)	59,280 (7.5)	4,082 (0.5)
적립금 (비율)	43,090 (100)	28,207 (65.4)	11,923 (27.7)	1,880 (4.4)	1,080 (2.5)

참고 1 :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동향

◆ 1층 공적연금의 축소

-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 실시
 - 연금지급축소(독일, 70→64%, '30년) · 연금보험료 인상(일본, '04년 13.5→'17년 18.3%) · 수급개시 연장(일본, 65세→67세, '13년), 납입기간 연장(프랑스, 37.5년→40년→42년, '20년) 등

◆ 2층 퇴직연금의 강화

- 1층 공적연금의 축소에 대응하여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퇴직연금 강화
 - ①칠레 등 사적연금의 공적연금 완전대체, ②프랑스·스위스·네델란드 등의 부분대체(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퇴직연금은 강화), ③일본·영국 등의 적용제외 등의 유형이 나타남(퇴직연금에 가입시 공적 연금의 보험료 납부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각국의 공·사 연금 역할 분담 현황>

국가명	소득대체율			2층 구조 점유율
	1층 구조	2층 구조	총소득대체율	
호주	25	33	58	57
칠레	0	42	42	100
네델란드	35	35	70	50
스위스	30	30	60	50
영국	17	17	34	50

자료 : Estelle James, Sarah Brooks,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Pension Reform", World Bank, February 2001.

- 특히 OECD 가입국 중 9개 국가(프랑스, 스위스, 네델란드, 호주, 스웨덴, 이태리 등)와 칠레, 홍콩 등은 2층의 퇴직연금제도를 강제화하고 있고,
 - 미국, 일본, 영국 등 퇴직연금제도가 임의인 국가도 적립금이 각각 약 1경5천조원, 약 3천조원, 약 2.6천조원 등에 이르는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2층 노후보장장치로 확고히 자리매김

참고 2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노후소득대체율 추정

◆ 적립금규모 추정 : 2010년 약 25조원, 2020년 약 220조원

- '08.6월말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는 약 76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의 11.2%)에 머물고 있으나
 - 금번 제도개선과 2010년 퇴직보험 등의 폐지, 4인 이하 사업장 확대 스케줄 등을 감안할 때
 - 2010년에는 근로자의 약 30%, 2020년 약 80%가 가입할 것으로 추정
- '08년.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4조원이나 가입률 증가 속도, 기존 가입자 적립금 누적 등을 고려하는 경우 2010년 약 25조원, 2020년 약 220조원으로 전망
 -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제도원숙기인 2040년 경에는 연간 GDP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

◆ 소득대체율 전망

- OECD 국가들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인 65%정도 (방하남, 2005.1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연금 역할)를 국가적 노후보장 수준으로 설정할 때,
 - 2040년 제도원숙기에는 국민연금 40%(2028년부터 40% 소득 대체), 퇴직연금 25% 등의 소득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 World Bank는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25%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World Bank, 『Republic of Korea :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 Report No. 20404-KO May 10, 2000)

2. 기본방향

가.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 현행법령은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단순한 형태로 제도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곤란

⇒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허용, 담보대출 활성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추진

나. 퇴직급여제도 수급권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원칙), DB의 재정건전성 강화(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등)

다. 제도 활성화 촉진

- 퇴직급여제도의 기본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 개인 퇴직계좌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자동설정 추진,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자영업인 등에 확대

라. 퇴직연금 제도운영인프라 확충

-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절차, 사용자의 제도변경·폐지·중단 절차 등 관련제도 보완

참고 3 : 변화된 법령체계

- 제1장 총칙에서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2장으로 규정하고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으로 분리하고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규정된 규약세부 사항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규정
- “보칙”에서 “개인퇴직계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 관한 장(제5장)을 신설

현 행	개 편 안
1장. 총칙	1장. 총칙
2장. 퇴직금제도	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3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4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4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5장. 책무 및 감독	5장. 개인형 퇴직연금
6장. 보칙	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7장. 벌칙	7장. 책무 및 감독
부칙	8장. 보칙
	9장. 벌칙
	부칙

참고 4 : 관계부처 법령 개정 필요사항

◆ 퇴직연금관련 세제개선(소득세법, 법인세법)

가. 근로자 측면

- DC형의 근로자 추가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현재 개인 연금과 합산 연간 300만원을 개인연금과 별도 300만원으로 인정)(소득세법)
-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폭을 확대하여 퇴직금(일시금) 대비 세제혜택 확대(연간 2400만원까지 연금이 유리하도록 설계)(소득세법)

나. 사용자 측면

-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규모를 점진적 축소·폐지('08년 35%, '09년 30%→ 이후 매년 5%씩 하향조정)(법인세법)
- 계속기준으로 산정한 퇴직부채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허용(법인세법)

◆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적용(예금자보호법)

- DB형 및 DC형에 대한 예금자보호 전면 적용
- 보호한도를 현행 개인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조정

II. 개정내용

1.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1-1. 가입자별 복수퇴직연금제도 도입

가. 현황 및 필요성

- 사업장내에서는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선택하여 도입이 가능하나.
 - 근로자 개인은 복수 선택이 불가능하여 기업이나 근로자 실정에 맞는 퇴직급여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개정 내용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동시가입 허용
 - 이 경우 각 제도별 가입비율 합은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제도형태 및 가입비율을 적용(안 제18조)

< 예시 : A사업장의 생산직근로자에게 DB, DC의 병행 선택 >

- DB의 급여는 30일분 평균임금의 60%, DC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1/12'의 40%로 설정
- A사업장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혼합형태와 가입비율의 집단적 변경은 허용하되 가입자 개인별 변경은 불허
- 각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상이 되도록 규약에 규정(DB 가입비율 + DC 가입비율 \geq 1)

다. 해외 사례

- 일본 닛산은 DB 75%, DC 25%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이 '퇴직급여=복수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음

라. 기대효과

- 개인별 DB형, DC형 등의 혼합운용을 허용함으로써 DB형(안정성)과 DC형(수익성)의 장점을 향유하고
 - 근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

1-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임금체불 방지, 노후재원 확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함

- 실제 도입상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사담당자 등은 “노사 간 동의 등 절차의 복잡성(인사담당자, 20%)”을 들고 있음

나. 개정내용

-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근로조건이 불이익한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안 제4조제3항)

다. 해외 사례

- 강제가입인 호주는 특별한 노사 합의절차 없이 근로자가 퇴직연금 플랜을 선택(동의)하면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 미국·영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복리후생 제도로서 근로자 개별 동의만 있는 경우 연금플랜 가입

라. 기대효과

- 퇴직연금의 도입절차를 합리화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확대

1-3. 복수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가. 현황 및 필요성

- 개별사업장 단독의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수수료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 사용자가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
-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게 단독의 퇴직연금 운용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

나. 개정 내용

-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3조제1항)
- DC형에 한하여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단체형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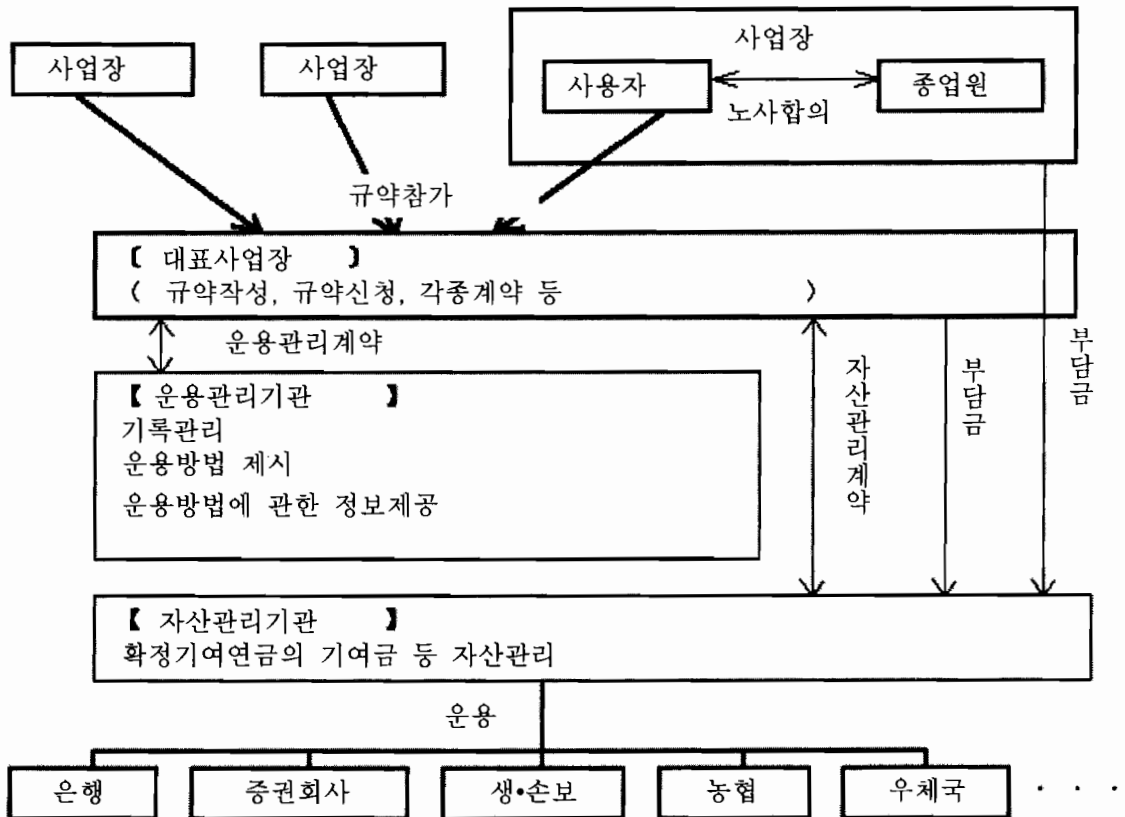
다. 해외 사례

<1> 일본

- 일본에는 단독형, 연합형, 종합형 등 3가지의 퇴직연금 형태가 있음
- 연합형은 기업그룹 단위로, 종합형은 자본 및 인적관계가 없는 여러 개의 기업이 가입하는 것이며,

- 대표사업장과 사업자 간에 체결된 규약에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임
 - * 대표사업장에는 특정 사업장, 업계단체, 운용관리기관 등이 있음.
- 연합형 · 종합형에 참여하더라도 참가기업은 가입자격, 부담금액, 부담금의 중단사유 등 설계에서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결정

< 일본의 연합형 도입 Flow >



- 일본의 경우 DC형(규약형만 존재)에서는 연합형 또는 종합형이 일반적인 형태(연합·종합형 62%)
- 다만, DB 규약형에서는 부담금 배분, 재정검증의 어려움으로 종합형은 존재하지 않음

<2> 홍콩

- 중소기업장이 많은 홍콩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강제가입 DC형인 MPF제도를 도입
 - 가장 일반적 MPF제도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형으로서 MPF 자산('07.3월말 2,054억 HK\$)의 97.3%를 차지
-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마스터 트러스트 형태의 연합형 퇴직연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MPFA)으로부터 MPF Scheme을 인가받아야 함.
 - 연합형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MPF Scheme을 선택하고 사용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자는 동의서를 작성해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가입이 완료됨.

라. 기대효과

- 현재와 유사한 제도에서 가입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어서 관리비용, 수수료 등의 절감이 가능
- 퇴직연금 운영부담이 적어 중소기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1-4. 담보대출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연금의 담보대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의 제약(근로자 퇴직이전에는 담보권 시행 불가)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대출을 꺼리는 실정
- 이에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하여 퇴직 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함께 취급토록 할 필요

나. 개정내용

-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쟁점 및 기대효과

-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시금 수요를 충족 시킴으로써 퇴직연금 확산이 기대

2.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2-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
 -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

나. 개정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다. 해외 사례

-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허용

라. 쟁점

<사용자 측면>

○ 중간정산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중간정산보다 DC형 도입이 더 합리적 방법임

○ 중간정산은 연봉제를 촉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곤란

⇒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DC형을 도입함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할 필요

* 매년 1개월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6%, 매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3.5%('07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노동부)

<근로자 측면>

○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58.1%를 차지하고 있는 바 ('06년 퇴직연금 실태조사, 노동부), 중간정산 요건 강화는 근로자의 급박한 일시금 요구를 제약할 우려

⇒ 노동계에서도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긴급생활자금 욕구는 담보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2-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평균근속기간이 5.9년('07년 기준, 노동부)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장 이동에도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

나. 개정내용

- 이직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을 보존
 -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해외 사례

- 일본의 경우 65세 이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형 DC(IRA와 유사)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기금 연합회*로 강제 이전하여 통산시킴

* 자영인 등이 가입하는 개인형 DC제도를 맡아서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

라. 쟁점 및 기대효과

- 55세 이전에 수령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시킴으로서 충분한 노후재원 확보가 가능

2-3. DB형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재는 DB형 제도의 재정건전성 기준만 제시되어 있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가 부재
- 적립금의 적립 과·부족에 대한 처리 근거 등이 불비하여
사외적립이라는 본래 취지가 반감

나. 개정내용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에게 통지(안 제15조제2항)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 지불해야할 퇴직부채(기준책임준비금)의 60%(현행)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장래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150%를 초과한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 계속기준(회사가 영속한다고 가정)의 퇴직부채, 비계속기준(회사가
도산했다고 가정) 퇴직부채 중 큰 금액

다. 해외 사례

- 미국은 적립률이 90% 이하인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적립부족액을 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잉여 부담금은 장래의 부담금과 상계하도록 함
- 일본의 경우 적립률(연금자산/연금부채)이 90% 이하인 경우 부족액을 7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심각한 적립부족에 대해서는 연금급여를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함
 - 일본의 경우도 잉여 부담금에 대해서 장래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대효과

- 현행 운영 중인 DB형 재정검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립금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 사용자 부담을 합리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2-4.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퇴직연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석운용하고 있으나
 - 동 해석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현행법 제31조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나. 개정내용

- 퇴직 후 14일 이내에 DB형의 퇴직급여 미지급, DC형 부담금 미납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한 벌칙을 부과(안 제16제2항, 제20조제4항, 제42조)

다. 기대효과

- 퇴직연금 체불에 대하여 퇴직금의 벌칙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2-5. 퇴직연금의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퇴직연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3년치는 최우선 변제) 되도록 해석하고 있으나
 - 동 해석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현행법 제11조는 퇴직금에 한하여 우선변제 하도록 규정) 이를 명확히 할 필요

나. 개정내용

-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우선변제 규정을 적용(안 제11조)

다. 기대효과

- 퇴직연금 체불에 대하여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2-6. DC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으로 인해 DC형 가입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DC형 계정에서 운용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야 함
- 환매과정에서의 수수료 부담, 손실가능성, 고객불편 등을 초래

나. 개정내용

- DC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운용 중인 자산 그대로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허용(안 제24조 제7항 본문)
- 다만, DC형 사업자와 개인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다를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문제, 시스템 인터페이스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일 사업자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 24조제7항 단서)

다.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임

라. 기대효과

- 운용중인 상품을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낮은 가격의 매도에 따른 손실 및 중도환매에 따른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방지

2-7. DB형 퇴직연금 급여지급 방식 변경

가. 현황 및 필요성

- 퇴직시 DB형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적립비율(적립금/퇴직부채)에 따라 지급*하여
 -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급여액에 퇴직시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양쪽에서 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사용자의 도산 또는 경영사정 악화 시에 체불발생 등의 문제

나. 개정내용

- 적립비율(적립금/비계속 기준 퇴직부채)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적립금 이내에서 퇴직자에게 급여전액을 지급
- 다만, 적립금의 심각한 변동으로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근로자간 불공평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시행령에 규정(안 제16조제3항)

다. 해외 사례

- 전액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적립비율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회사 핵심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원 등이 회사의 파산징후를 알았을 때나 부도설 등으로 퇴직금 신청이 증가할 경우 적립비율 적용
- 미국의 경우도 핵심 임원 등의 경우 적립비율에 의해 지급하도록 규제

-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거근무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적립비율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제도 성숙시 연금계리사의 컨설팅을 통해서 전액지급방식으로 변경

라. 기대효과

-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금계리의 효용성을 높여 DB 제도의 건전성 강화

* 전액지급방식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일괄 수령하는 반면, 적립비율방식에서는 사업자와 사용자로부터 분할 수령

3. 제도 확산 촉진

3-1.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사외적립을 통한 체불방지, 직장 이동에도 불구하고 노후 재원의 보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 퇴직금은 자동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를 통한 선택사항으로 되어 도입이 저조한 상황
- 특히, 잦은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노후보장 기능이 어려운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 기득권이 없는 신규 사업장에까지 자동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 등에 있어 문제

나. 개정내용

- 신설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외 사례

- 프랑스, 호주, 스위스, 홍콩, 영국(예정) 등이 2층 노후 보장장치인 기업연금에 대한 가입 강제화 실시

- 이태리는 6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적립금을 자동으로 퇴직연금으로 이관
- OECD에서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가입을 통한 약한 강제화(soft compulsory) 등을 권고하고 있음(Ensuring an adequate coverage private pension 2007 OECD)

라. 기대효과

- 근로자의 이동이 많고 주로 영세규모인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을 강제함으로서,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의 유연한 인사노무관리 가능(DC형의 경우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 도입용이)

3-2.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국내 자영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06년 말 기준 취업 근로자 대비 32.8%로 OECD 국가 평균인 16%의 두배 수준
 -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 자영인 대부분의 영업환경이 영세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
 - DB형에는 근로자가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 DC형의 가입자 추가 부담은 수수료 부담 문제*로 인하여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해 미국의 401k와 같이 근로자 부담에 의한 충분한 노후재원 마련이 어려움
- * DC형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금융구조로 인하여 사용자가 꺼림

나. 개정내용

- 현행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명칭변경(제2조제9호 등)
-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영업자, DB형 및 DC형 가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2항)
- 개인형 퇴직연금에 퇴직급여 일시금 외에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6항)

다. 해외 사례

-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자 각출에 대하여 연 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일본은 개인형 DC(우리나라의 IRA에 해당)를 통하여 자영인 및 기업연금이 없는 기업의 근로자가 임의로 적립하고 있음

라. 기대효과

- 자영인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기사, 택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연예산업 종사자 등 1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개인사업자임)의 활용이 기대
- 부담금 추가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이 DB형, DC형과 더불어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한 한 형태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특히 자영인의 활용 기대)

3-3.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개선

가. 현황 및 필요성

- 10인 미만 사업의 영세성, 잦은 직장 이동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근로자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설정절차가 오히려 더 복잡하여 활용도가 낮은 실정

나. 개정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요구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으로 간주함(안 제25조제1항)

다. 해외 사례

- 호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자별로 DC형 계좌를 개설하여 은퇴시점까지 동 계좌에서 적립금을 관리
- 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은 공적연금까지 IRA 형태로 일원화하여 기업연금 형태로 운영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함

라. 기대효과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전 근로자의 의무가입 규제를 해소하여 사용자가 쉽게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퇴직급여제도 운용을 가능하도록 함

4. 제도 운영인프라 확충

4-1.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법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 유권해석을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의 하나로서 퇴직연금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등 금융중개인은 법적 근거가 없이 모집업무 수행을 퇴직연금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업무의 수행의 위탁을 요구하고 있음
 - * 실제로 보험설계사 협회 등은 행정소송, 질의요청,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직연금 판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후보장제도로서 전문적 지식구비 없이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판매하는 경우
 - 펀드, 보험 판매 등의 사례와 같이 허위정보에 의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금융중개인의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수행을 허용하되 일정한 자격구비와 수행준칙을 마련할 필요

나. 개정내용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
 - * 모집업무는 시장접근 단계에서 역할 수행하면서 특정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안내하는 보조적 역할
-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 신설(교육 이수, 시험, 등록 등)(안 제30조제1항)
-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업무범위(퇴직연금 모집에 국한 등), 준수사항(재위탁 금지, 복수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 금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30조제2항)

다. 해외 사례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기금형이 아닌 계약형으로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상대방을 대상으로 도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중요

라. 기대효과

- 현재 진행 중인 자격 없는 자에 대한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를 제한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 중소기업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

4.2.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등 마련

가. 현황 및 필요성

-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사업 중단을 모색 중이나
 - 자발적 등록말소 규정이 없고, 무엇보다 사업 중단시 가입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이 큰 문제

나. 개정내용

-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31조제3항)
 - 퇴직연금사업 중단 등의 경우 가입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1조제4항)
- 퇴직연금사업의 잦은 진입 및 탈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고 금융기관의 사업개시 등의 신중성을 높이기 위하여
 - 등록취소(3년) 또는 등록말소(2년)시에 재진입 제한 규정 마련(안 제31조제2·3항)

< 여타 금융업의 등록취소 또는 말소에 따른 재진입 제한 현황 >

- 보험업의 경우 채무불이행 5년, 공정거래법 5년, 조세처벌법 5년, 부실기관 지정 및 기타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경우 영구히 불가능
- 신탁업의 경우 채무불이행 5년, 공정거래법 5년, 조세처벌법 5년, 부실기관 지정 및 기타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경우 영구히 불가능
- 여신전문금융업 말소 또는 취소로부터 3년
- 전자금융업 말소(1년), 취소(3년)
- 보험대리점 취소 또는 말소로부터 2년(방가슈랑스 3년)

다. 기대효과

- 자발적인 등록취소를 통하여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약체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 가입자 보호 규정 강화로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신중한 시장 진입을 유도

4-3. 제도폐지·중단 관련 규정 보완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근퇴법령에는 제도폐지, 제도중단 등과 관련된 조항이 미흡하여 법해석상 안정성 등 저해
- 향후 제도폐지 및 중단 등의 사례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가입자 보호, 노후자금의 유출방지, 관련 업무처리의 명확화 등을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

나. 개정내용

-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성실의무 규정(안 제32조제1항)
- 제도중단에 의해 가입자가 급여를 중간정산 받을 수 없도록 하고(안 제38조제4항)
 - * 퇴직연금 제도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여지급을 위해 제도중단이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제도중단의 경우에도 가입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급여의 지급, 적립금 운용)를 유지하도록 규정(안 제38조제2항)
- 제도폐지 시 부담금 미납분 납입, 잔여재산 배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동 결과를 노동부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안 제38조제3항)
 - 제도폐지로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존 중간정산 처리 대신에 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도록 개정(안 제38조제4항)

다. 해외 사례

- 일본의 경우 가입자 보호조치 등 관련 법에 제도이행(변경) 및 종료(폐지)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 시행규칙에서는 계약이전 등의 절차를 신청 서류 단위까지 상세히 규정

라. 기대효과

- 제도폐지·중단 등의 개념과 관련 업무처리 등에 나타날 혼란의 소지 해소
- 제도중단 및 폐지 등의 경우에 가입자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의무화하여 노후재원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4. 조사·통계 인프라 구축 관련

가. 현황 및 필요성

- 부담금 납부, 재정건전성 충족 여부 등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 의무이행에 대한 상시 감독 필요
- 다만, 사업장에는 재정건전성 충족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고, 몇 개 사업장의 근로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통계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감독을 실시할 필요

나. 개정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6조제4항)

다. 기대효과

-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개별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상시적인 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

4-5. 특별이익 제공 관련 사업자책무 구체화

가. 현황 및 필요성

- 사업자 책무 관련 금지조항에서 특별 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
 - 퇴직연금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움

나. 개정내용

- 특별 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제2항제2호)
 - * 증권, 보험 등 관련 법규에서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증권거래법 제52조의4 (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5.~7. <생략>

동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 해외사례

- 일본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급부연금법, 확정각출연금법에서 사업주 행위준칙을 명시
- 미국의 노동성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

라. 기대효과 및 쟁점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당경쟁 및 시장의 혼탁상황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

4-6. 반의사불벌 조항 신설

가. 현황 및 필요성

- 근로조기준법 제109조는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불비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으로 간주하여 '반의사불벌'을 적용

나. 개정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명문화(안 제42조)

다. 해외 사례

- 해당 없음

라. 기대효과

- 실무적으로 해석에 의해 적용되던 반의사불벌 조항을 명문화

4-7.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

가. 현황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관계조항 정비

나. 개정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

다. 해외 사례

- 해당 없음

라. 기대효과

- 해당 없음

4-8. 과태료 규정 개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법무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관계조항 개정

나. 개정내용

- 과태료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개정
(안 제46조)

다. 해외 사례

- 해당 없음

라. 기대효과

- 해당 없음

4-9. 양벌규정 조항 개정

가. 현황 및 필요성

- 2007.11.29 헌법재판소에서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 개정

나. 개정내용

- 사용자 등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개정(안 제45조)

다. 해외 사례

- 해당 없음

라. 기대효과

- 해당 없음

Ⅲ. 추진일정

1. 노동부 개정(안) 마련

- 퇴직연금실무위원회 논의('07.11~'08.3)
- 퇴직연금활성화작업반 논의('07.11~'08.6) 및 연구용역 추진(4개과제, '08.3~9월)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퇴직연금정책포럼 활용)
- 노동부 개정(안) 확정(8월말)

2. 정부 입법(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완료(9.5, 10일)
- 입법예고 완료(9.29, 20일)
 - ※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개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10월 중순, 최대 30일)
- 법제처 심사 완료(11월중순, 최대 30일)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11월말)
- 정부(안) 확정(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재가 10일)

3. 국회 절차

- 정기국회 제출(12월초)